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039

2024년 9월 10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 8. 12. 박석 의원(23명 찬성)

나. 회부일자 : 2024. 8. 14.

다. 상정일자 : 제326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 2024년 9월 10일 상정·의결(수정 가결)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 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재직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인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12일에서 15일로 늘리는 등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확대하고, 공무원이 이월·저축한 연가의 소멸시효를 폐지하여 언제든지 공무원이 이월·저축한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취지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된 사항을 서울특별시의회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확대함(안 제20조).

○ 이월·저축한 연가의 소멸시효를 폐지함(안 제25조제2항 삭제).

○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으로 확대함(안 제29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로 갈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4. 8. 20. ~ 2024. 8. 24.

나) 예고결과 : 없음

2) 소관부서 의견조회 : 원안동의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최현재)

1 개정안의 개요 및 취지

○ 본 개정조례안은 저연차 공무원 연가 일수 확대·육아시간 사용범위 확대 등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4661호, 2024.7.2. 일부개정 및 시행. 이하 '복무규정'이라 함.)이 지난 '24년 7월 2일 개정되었으므로 해당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비하고자 발의된 것임.

2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행정안전부) 추진

○ 행정안전부는 지난 '24년 4월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률 증가 및 우수한 공무원의 조기퇴직 증가 현상을 완화하고자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마련'[1]을 발표함.

- 조성방안은, 가정친화적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육아시간 확대와 유급 가족돌봄 휴가 확대, 공무원 휴식보장을 위한 연가일수 확대 등을 도입해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는 근무 여건'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2]

○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마련'에 따른 위한 복무규정 개정('24.7.2. 개정, 시행) 사항을 반영하는 것임.

---

1) 관계부처합동(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보도자료,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마련", (2024.3.26.).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개선을 위한 주요내용으로 ▲ 일 잘하는 공무원 승진 기회 확대(임용령 개정을 통한 근속승진 개선, 대우공무원 선발기간 단축, 특별승진 사유 추가 등), ▲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는 근무 여건 개선(복무규정 개정을 통한 육아시간 확대, 가족돌봄 휴가 확대, 저연차 공무원 연가 확대 등), ▲ 지속 가능한 성장 기회 제공(교육 기회 확대, 국외훈련 신설, 연수휴직 기간 확대 등), ▲ 헌신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호 강화, ▲ 지자체 경비 현실화(급량비 인상 등)을 추진한다.

2)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마련 등을 위한 인사관계 법령 개정 추진", 자치분권국 지방인사제도과(2024.4.8.).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을 위한 복무규정 주요 개정내용('24.7.2. 시행)>

구분	개 정 전	개 정 후
①육아시간 확대	◦ **5세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 **24개월간 유급**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 **36개월간 유급**
②유급 가족돌봄 휴가 확대	◦ 자녀 돌봄시 2일 (다자녀(2자녀) 이상 3일)	◦ 자녀 돌봄시 2일 (다자녀 3일, 셋째 자녀부터는 유급 1일씩 추가, **장애인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부모인 공무원의 경우 유급 1일 추가**)
③연가일수 확대	◦1년~2년 미만 : **12일** 2년~3년 미만 : **14일** 3년~4년 미만 : **15일**	◦1년~3년 미만 : **15일** 3년~4년 미만 : **16일**
④저축연가 소멸시효 폐지	◦저축연가 **소멸시효 10년**	◦**소멸시효 폐지**
⑤형제자매 사망 경조사 휴가 확대	◦1일	◦3일

2-1 공무원 휴식보장을 위한 휴가제도 개선

가. 저연차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안 제20조)

○ 안 제20조는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확대하는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기존 1년~2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를 12일, 2년~3년 미만은 14일로 규정된 것을 1년~3년 미만 15일, 3년~4년 미만 16일로 확대하였음.

○ 이는 저연차 공무원들의 연가 일수를 확대해 적절한 휴식 기간이 부여되도록 하려는 것이며 시의회사무처는 이미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해 '24년 7월 이후 해당 공무원들에게 확대된 연가 일수가 제공되었음.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재직기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1년 이상 2년 미만	12	1년 이상 3년 미만	15
2년 이상 3년 미만	14	3년 이상 4년 미만	16
3년 이상 4년 미만	15	4년 이상 5년 미만	17
4년 이상 5년 미만	17	5년 이상 6년 미만	20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21
6년 이상	21		

나. 연가저축에 대한 소멸시효 폐지(안 제25조 관련)

○ 안 제25조는 기존에 이월·저축한 연가의 소멸시효가 기존 10년이었으나, 이를 폐지하여 개인의 사정에 따라 저축한 연가를 적정한 시기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임.[3)]

○ 더불어 안 제25조제2항은 기존에 이월·저축한 연가에 대해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내용을 유지하면서 공무원이 직권면직된 경우,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음.

○ 연가저축 분에 대한 소멸시효를 폐지함으로써 업무 수행 중 연가 사용이 어려운 여건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별도의 보상이 없이 소멸되도록 한 것은 불합리한 면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해 장기 성실 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한 것임.

---

3) 연가저축 제도는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일수 중 예산 범위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일수(복무규정 제7조제4항, 2024년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휴가지침에 따른 미보상 권장연가일수는 10일.)에 대해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저축하는 제도임. 이에 따라 저축하는 연가는 저축하는 연도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음.

2-2 가정친화적 공직문화 조성

가. 육아시간의 확대(안 제29조제5항)

○ 안 제29조제5항은 육아시간을 기존 5세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 24개월 동안 부여하던 것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 36개월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활용범위를 확대한 것임.

○ 육아 공무원이 보다 원활하게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 전반에 요구되던 정부 차원의 육아 환경 개선방안 마련 요구가 일부 실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조례안에 따른 육아시간 변경사항>

	현행	개정안
육아시간	0세~5세 1일 2시간, **24개월**	0세~8세, 초등학교 2학년 이하 1일 2시간, **36개월**

나. 교육지도시간 사용대상 연령의 확대(안 제29조제6항)

○ 한편 지난 '24년 3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선제적으로 '교육지도시간'이라는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육아시간의 부족함을 개선하였음.

○ 기존 교육지도시간은 6세 이상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이 1일 2시간 범위에서 24개월 범위 내에 활용할 수 있었으므로, 본 조례안은 확대된 육아시간의 사용 범위인 8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는 육아시간을 활용하도록 하고 교육지도시간의 사용 대상 연령을 확대하여 기존의 제도도 이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이를 위해 육아시간 사용 대상 연령이 초과되는 9세부터 12세 이하,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자녀의 학습 지도를 위해 1일 최대 2시간 총 12개월의 범위에서 교육지도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한편, 자녀의 연령기준이 아닌 학년 기준으로 이를 사용하는 경우 육아시간을 초등학교 2학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교육지도시간은 초등학교 3학년일 때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안 제29조제6항 단서).

○ 이에 따라 육아시간을 기존 24개월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교육지도시간을 24개월 범위에서 활용할 수 있던 것이, 육아시간을 36개월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교육지도시간을 12개월 범위에서 활용하도록 하여 총 48개월의 육아 관련 특별휴가를 부여받게 됨.

<조례안에 따른 육아시간 및 교육지도시간 총 사용범위>

	현행	개정안
육아시간	0세~5세 1일 2시간, **24개월**	0세~8세, 초등학교 2학년 이하 1일 2시간, **36개월**
교육지도시간	6세~8세 1일 2시간, **24개월**	9세~12세, 초등학교 3학년~6학년 1일 2시간, **12개월**
총 사용 범위	**48개월** 내	**48개월** 내

○ 다만, 동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로 발의된(의안번호 2022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 제24조제5항은 교육지도시간 사용대상 자녀 연령을 '9세 이상 10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4학년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일치시켜 통일적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는지에 대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다. 유급 가족돌봄휴가 확대(안 제29조제6항)

○ 안 제29조제6항은 복무규정상 가족돌봄 휴가의 확대에 관한 사항을 반영한 것임.

- 기존에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돌보기 위한 휴가 사용 시 연간 2일(다자녀 이상 3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던 것을, 자녀 수에 따라 1일씩 추가적으로 유급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예시) 3자녀 3→4일(+1일) / 4자녀 3→5일(+2일)

- 이에 더하여 장애인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자녀 수에 1을 더한 일수에 추가로 1일의 유급 휴가를 더 부여하도록 하였음.

라.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휴가 확대(안 별표5 관련)

○ 안 별표5는 복무규정상 형제자매 사망에 대한 경조사 휴가가 확대된 사항을 반영한 것임.

○ 기존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1일이던 경조사 휴가를 3일로 확대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기존 1일을 유지하도록 하였음.

<[별표5]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중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휴가 변경>

현행			개정안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신 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3 복무규정 상 용어 정비사항의 반영(안 제8조, 제29조)

○ 안 제8조는 최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공무원 직렬 관련 법령 용어 정비를 위해 ‘일직·숙직·방호원’을 ‘일직근무자·숙직근무자·방호직 공무원’으로 개정하였고,[4] 동일한 용어에 대한 혼란방지를 위해 해당 개정사항을 본 조례안에도 반영한 것임.

○ 안 제29조의 용어정비 사항은 출산휴가,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등 휴가의 사용은 공무원의 권리이므로 이를 능동적인 용어·문장으로 개선하는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임.

- 기존에 휴가와 관련하여 해당 공무원은 휴가를 “받을 수 있다”로 표현하던 것을 “사용할 수 있다”로 개선하고, “휴가를 주어야 한다”로 표현하던 것을 “사용할 수 있다”와 같이 능동적 표현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 그밖에 안 제29조 제10항은 인용 법령명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한 것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으로 폐지되었음.).

4 종합검토

○ 본 조례안은 공무원들에게 확대된 휴가와 육아시간을 제공하여 심각한 저출산 시대에 일·가정 양립에 기여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며, 용어 정비를 통해 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공무원의 권리’라는 인식 확대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

4)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4660호, 2024.7.2., 일부개정 및 시행.)

○ 저축연가 소멸 시효 폐지,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 확대, 형제자매 사망 시의 경조사 휴가 확대 등은 공무원들이 확대된 연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휴식과 재충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휴가 후에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확대된 육아시간과 본 조례에서 선제적으로 인정해온 교육지도시간은 자녀 돌봄 공백을 해소할 실질적 지원이 될 것임.

- 교육지도시간은 기존에 「서울형 일·육아 동행근무제」의 실현을 뒷받침하고자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제도를 유지한 조례안의 목적에 공감할 수 있음.

○ **(수정의견)** 다만, 이와 관련해서 조례안은 확대된 육아시간에 대한 적용례를 두고 있는데, 육아시간과 교육지도시간 사용 시의 혼선을 줄이기 위하여 '24년 3월 도입되어 이미 사용된 교육지도시간은 **개정된 육아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적용례를 두어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중 교육지도시간 사용 현황을 보면 20명 이내의 공무원이 '24년 3월부터 '24년 6월까지 3개월 간 사용 당시 기준 6세 ~ 8세인 자녀(2015년~2018년생) 돌봄을 위해 교육지도시간을 사용하였음.

- 다만, 복무규정이 개정된 '24년 7월 2일 부터는 이들에 대해 육아시간을 적용하도록 하였고, 사용된 육아시간이 복무규정 개정으로 확대된 12개월을 초과하는 사례는 없으므로 이 조례 시행 후에 종전에 규정에 따라 교육지도시간을 쓴 것은 개정규정에 따른 육아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하고, 추후 교육지도시간 사용 연령기에 돌입하면 교육지도시간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그밖에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에 대한 휴가 특례를 규정한 조례 제30조의 본문 내용 중 인용조문 개정사항(제29조제4항은 '23.12.29. 개정으로 제29조제5항으로 항번호가 변경되었음)이 미반영 된 것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수정의견>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30조(시간선택제공무원 등에 대한 휴가에 관한 특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 같은 영 제3조의5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같은 영 제38조의15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한 휴가는 제16조제2항, 제20조, 제24조제1항·제2항, 제26조제3항·제4항, 제27조, 제29조제4항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6에 따른다.	**제30조(시간선택제공무원 등에 대한 휴가에 관한 특례)**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시간 사용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5항 및 별표 6 제5호나	**제30조(시간선택제공무원 등에 대한 휴가에 관한 특례)** ---------- 제29조제5항 ----------. **부 칙** **제1조(시행일)** (개정안과 같음) **제2조(교육지도시간 사용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목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육아시간을 사용한 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 공무원등에 대해서는 2024년 7월 2일을 기준으로 종전에 사용한 일수를 공제하고 적용한다.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지도시간을 사용한 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공무원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종전에 사용한 교육지도시간 일수를 제29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육아시간 일수에서 공제하고 적용한다.
	제3조(이월·저축한 연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이월·저축한 연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삭 제>**
	제4조(경조사 휴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2일 이후 경조사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삭 제>**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교육지도시간 사용 범위를 축소하여 서울시 소속 공무원과의 형평을 도모하고, 육아시간의 사용 범위에 관한 적용례를 두어 기존에 교육지도시간을 사용한 일수는 확대된 육아시간 사용 범위에서 공제하여 두 제도 간의 사용 범위 혼돈을 최소화 하고자 함.

○ 그 밖에 인용 조문을 현행화 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 하고자 함.

나. 수정의 주요내용

○ 안 제30조의 인용조문을 현행화 함(제29조제4항 → 제29조제5항).

○ 안 제29조제6항 교육지도시간의 사용범위를 축소함(9세 이상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 9세 이상 10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4학년).

○ 부칙 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시행에 따라 적용례가 불필요한 사항은 삭제하고, 확대된 육아시간에 지난 7월 2일 이전에 사용한 교육지도시간 일수를 공제하도록 적용례를 정비함.

8. 심 사 결 과 : 수정 가결

(재적의원 13명, 출석위원 9명, 찬성 9명)

9. 소수 의견의 요지 : 없 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039

제안년월일 : 2024년 9월 10일
제 안 자 : 운 영 위 원 장

1. 수정이유

○ 교육지도시간 사용 범위를 축소하여 서울시 소속 공무원과의 형평을 도모하고, 육아시간의 사용 범위에 관한 적용례를 두어 기존에 교육지도시간을 사용한 일수는 확대된 육아시간 사용 범위에서 공제하여 두 제도 간의 사용 범위 혼돈을 최소화하고자 함.

○ 그 밖에 인용 조문을 현행화 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30조의 인용조문을 현행화 함(제29조제4항 → 제29조제5항).

○ 안 제29조제6항 교육지도시간의 사용범위를 축소함(9세 이상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 9세 이상 10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4학년).

○ 부칙 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시행에 따라 적용례가 불필요한 사항은 삭제하고, 확대된 육아시간에 지난 7월 2일 이전에 사용한 교육지도시간 일수를 공제하도록 적용례를 정비함.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기타사항 : 수정안조문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9조제6항 본문 중 “12세”를 “10세”로, “6학년”을 “4학년”으로 한다.

안 제30조 중 “제29조제4항”을 “제29조제5항”으로 한다.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지도시간 사용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지도시간을 사용한 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공무원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종전에 사용한 교육지도시간 일수를 제29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육아시간 일수에서 공제하고 적용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9조(특별휴가) ① (생 략)	**제29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제29조(특별휴가)**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을 전후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 ---------- 공무원은 ---------- 있다.	② (개정안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1. ~ 3. (개정안과 같음)
③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③ ---------- 사용할 ----.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④ ---------- 사용할 -----.	④ (개정안과 같음)

⑤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권 보장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⑤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 36개월----------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할 수 있다.	⑤ (개정안과 같음)
⑥ 6세 이상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준비, 학교 적응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교육지도시간을 받을 수 있다. <단서 신설>	⑥ 9세 이상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12개월---------- 학습 지도---------- 사용할 ---. 다만,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시간을 쓴 공무원은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일 때부터 교육지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⑥ 9세 이상 **10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4학년**까지---------- 12개월---------- 학습 지도---------- 사용할 ---. ---------- ---------- ---------- ---------- ---------- ----------.
제30조(시간선택제공무원 등에 대한 휴가에 관한 특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 같은 영 제3조의5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같은 영 제38조의15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	**제30조(시간선택제공무원 등에 대한 휴가에 관한 특례)** (현행과 같음)	**제30조(시간선택제공무원 등에 대한 휴가에 관한 특례)** ---------- ---------- ---------- ---------- ---------- ---------- ---------- ----------

원(이하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한 휴가는 제16조제2항, 제20조, 제24조제1항·제2항, 제26조제3항·제4항, 제27조, 제29조제4항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6에 따른다.		---------- ---------- ---------- ---------- ---------- ---------- 제29조제5항 ----------.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개정안과 같음)
	제2조(육아시간 사용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5항 및 별표 6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육아시간을 사용한 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공무원등에 대해서는 2024년 7월 2일을 기준으로 종전에 사용한 일수를 공제하고 적용한다.	**제2조(교육지도시간 사용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6항의 ---------- ---------- ---------- 교육지도시간을 ---------- ---------- ----- 이 조례 시행일----- ---------- 교육지도시간 일수를 제29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육아시간 일수에서 공제하고 ------.
	제3조(이월·저축한 연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이월·저축한 연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삭 제>**
	제4조(경조사 휴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	**<삭 제>**

	은 2024년 7월 2일 이후 경조사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일직·숙직·방호원”을 “일직근무자·숙직근무자·방호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연가일수)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라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재직기간	연가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1년 이상 3년 미만	15
3년 이상 4년 미만	16
4년 이상 5년 미만	17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21

제2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월·저축한 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1.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권면직된 경우

2.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무원이”를 “공무원은”으로, “있도록 하여야 한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받을”을 각각 “사용할”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5세”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으로, “24개월”을 “36개월”로, “받을 수 있으며”를 “사용할 수 있으며”로, “받을 수 있다”를 “사용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6세 이상 8세 이하”를 “9세 이상 10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4학년까지”로, “24개월”을 “12개월”로, “입학 준비”를 “학습 지도”로, “받을”을 “사용할”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시간을 쓴 공무원은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일 때부터 교육지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제29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을 “유산하거나 사산한 여성공무원은”으로, “주어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공무원이 신청하면”을 “공무원은”으로, “주어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받을”을 “사용할”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항, 제14항 및 같은 조 제1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받을”을 각각 “사용할”로 하고, 같은 조 제16항 중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

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를 “해당 공무원의 자녀(제15항제1호에 따른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말한다)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를 연간 유급 휴가 일수”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장애인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연간 유급휴가 일수에 1일을 더한 일수까지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제30조 중 “제29조제4항”을 “제29조제5항”으로 한다.

별표 5 사망의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란 다음에 사망의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

별표 5의 사망의 대상란 중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 배우자”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로 한다.

별표 6 제5호나목 중 “5세”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으로, “24개월”을 “36개월”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지도시간 사용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지도시간을 사용한 공

무원 또는 시간선택제공무원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종전에 사용한 교육지도시간 일수를 제29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육아시간 일수에서 공제하고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제8조(당직근무와 비상근무) ① 일직·숙직·방호원 등의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밖의 모든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20조(연가일수)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라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table>
<tr><th>재직기간</th><th>연가일수</th></tr>
<tr><td>1개월 이상 1년 미만</td><td>11</td></tr>
<tr><td>1년 이상 2년 미만</td><td>12</td></tr>
<tr><td>2년 이상 3년 미만</td><td>14</td></tr>
<tr><td>3년 이상 4년 미만</td><td>15</td></tr>
<tr><td>4년 이상 5년 미만</td><td>17</td></tr>
<tr><td>5년 이상 6년 미만</td><td>20</td></tr>
<tr><td>6년 이상</td><td>21</td></tr>
</table></td><td>제8조(당직근무와 비상근무) ① 일직근무자·숙직근무자·방호직공무원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연가일수)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라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table>
<tr><th>재직기간</th><th>연가 일수</th></tr>
<tr><td>1개월 이상 1년 미만</td><td>11</td></tr>
<tr><td>1년 이상 3년 미만</td><td>15</td></tr>
<tr><td>3년 이상 4년 미만</td><td>16</td></tr>
<tr><td>4년 이상 5년 미만</td><td>17</td></tr>
<tr><td>5년 이상 6년 미만</td><td>20</td></tr>
<tr><td>6년 이상</td><td>21</td></tr>
</table></td></tr>
</table>

제25조(연가의 저축) ① (생 략)	제25조(연가의 저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이월·저축한 연가일수는 이월·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월·저축한 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1.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권면직된 경우 2.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소멸된 저축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1.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권면직된 경우 2.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휴직한 경우 3. 제27조제2항에 따른 병가를 30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 4. 30일 이상 연속된 특별휴가를 사용한 경우 5.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삭 제>
제29조(특별휴가) ① (생 략)	제29조(특별휴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을 전후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 ---------- 공무원은 ----------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③ ---------- 사용할 ----. ----------.
④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④ ---------- 사용할 -----.
⑤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	⑤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 36개월----------

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권 보장시간을 받을 수 있다.	----------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할 수 있다.
⑥ 6세 이상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준비, 학교 적응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교육지도시간을 받을 수 있다. <단서 신설>	⑥ 9세 이상 10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4학년까지---------- 12개월-------- 학습 지도---------- 사용할 ---. 다만,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시간을 쓴 공무원은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일 때부터 교육지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⑦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⑦ 유산하거나 사산한 여성공무원은 ---------- 사용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⑧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공무원이 신청하면 제7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	⑧ ---------- 공무원은 ---------- 사용

야 한다.	할 수 있다.
⑨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난임치료시술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⑨ ---------- 사용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⑩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20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⑩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사용할 ---.
⑪ ~ ⑬ (생 략)	⑪ ~ ⑬ (현행과 같음)
⑭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⑭ ---------- 사용할 ----.
⑮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⑮ ---------- 사용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⑯ 제15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	⑯ ----------

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 <단서 신설>	---------- 해당 공무원의 자녀(제15항제1호에 따른 어린이집등에 재학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말한다)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를 연간 유급휴가 일수---------. 다만, 장애인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연간 유급휴가 일수에 1일을 더한 일수까지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⑰ (생 략)	⑰ (현행과 같음)
제30조(시간선택제공무원 등에 대한 휴가에 관한 특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 같은 영 제3조의5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같은 영 제38조의15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	제30조(시간선택제공무원 등에 대한 휴가에 관한 특례) ---------- ---------- ---------- ---------- ---------- ---------- ---------- ----------

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한 휴가는 제16조제2항, 제20조, 제24조제1항·제2항, 제26조제3항·제4항, 제27조, 제29조제4항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6에 따른다.	---------- 제29조제5항 ----.